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7~2029)

〈 요 약 본 〉

2026. 11.

관계부처 합동

1 추진 배경 및 정책 여건

1 계획 수립 배경

○ 총 3차례의 **3개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 선정기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교육('15), 주거('18)) 완화('21), ▲주거급여(43%→48%, '19~'24) 및 생계급여(28%→32%, '16~'24)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 완화(4급지 개편, 기본재산 공제액 등 완화) 등
** (총 수급자 수) ('15) 약 165만명 → ('18) 약 174만명 → ('21) 약 236만명 → ('24) 약 267만명

○ 인구·가족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선제적 대응**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해결 위해 **3개년 계획 수립 추진**

* 제도 밖 빈곤층 보호, 보장수준의 실질적 확보, 근로유인 저하 및 반복 수급 등

2 정책 여건 및 현황

① 양극화 심화

○ **(소득·자산 양극화)** 최근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계층 간 생활여건이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

- **소득 분배 악화와 자산 불평등 누적,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

* ('21) 14.8% → ('22) 14.9% → ('23) 14.9% → ('24) 15.3%

소득 5분위 배율(상하위 20%간 격차)



*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순자산 지니계수의 급격 상승



*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 **(저소득층 생활기반 약화)** 저소득층의 **자산 기반**과 **소비여력 취약**으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 부족**

- 저소득층 **가계수지 적자 구조** 지속으로 **기본생활 유지 부담** ↑

○ **(계층 이동성 제약) 소득·자산 격차가 교육·건강·주거 등 삶의 기회 격차로 이어져 계층 이동성 제약 우려**

- **경제적 여력 부족** 및 **소득계층 고착** 등으로 빈곤 탈출 및 자립 한계

저소득층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소득분위별 이동 비율 (2023→2024년)
	
* 가계동향조사(2026.2분기)	* 소득이동통계(2024)

② 빈곤 추이 변화

* '24. 국민실태조사 결과

○ **(빈곤 추이)**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1년 이후 정체 또는 소폭 악화*** 추세로,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18) 16.5% → ('21) 14.8% → ('24) 15.3%

** 우리나라 빈곤율은 OECD 국가 34개국 중 6위('18년 기준) → 8위('22년 기준)

- 빈곤층에서 **고령층**(50%)* 및 **1~2인 가구**(71.4%)** **비율 증가**

* **(65~74세)** ('21) 18.4% → ('24) 18.6%, **(75세 이상)** ('21) 26.4% → ('24) 29.0%

** **(1인)** ('21) 29.7% → ('24) 36.9%, **(2인)** ('21) 35.2% → ('24) 34.5%

○ **(빈곤층 규모)**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21년 325만명 → **'24년 394만명으로 큰 폭 증가**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EITC 등 주요 공적소득보장 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비율은 대폭 감소('21. 8.0% → '24. 5.7%)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도 '21년 227만명(164만 가구) → **'24년 257만명(188만 가구)으로 증가**

○ **(빈곤 감소 효과)** 가처분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금액*은 **꾸준히 증가** * ('18) 7%, 240만원 → ('21) 11%, 404만원 → ('24) 10%, 428만원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증가

* (가구단위) '21. 19.8% → '24. 22.9%, (개인단위) '21. 16.0% → '24. 19.0%

2 제3차 종합계획 성과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성과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보장수준의 근거인 **기준 중위소득 매년 역대 최대폭 인상**('24. 6.09% → '25. 6.42% → '26. 6.51%)

- 선정기준도 '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24)

-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을 **상향 조정***('25)하고, **다자녀·생업용** 등 필수재 **자동차의 재산산정 기준 완화**(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등)

* 연 소득 1억 → 1.3억, 일반재산 9억 → 12억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생계급여 수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24), **부양비** 폐지**('26)

* (기존) 대도시 228 / 중소도시 136 / 농어촌 101.5(백만원)
→ (개선) 서울 364 / 경기 294 / 광역·세종·창원 283 / 기타 195(백만원)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24, 전국 지자체),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 인상**(월 60→73만원, 21.7%↑, '26)

* (기존)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 → (확대) 입·퇴원 반복환자 추가('24)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24)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하고, **3·4급지 보장수준 개선**

* '24~'26년 인상률 : 1급지 3.2~4.8%, 2급지 4.9~6.8%, 3급지 5.6~8.3%, 4급지 7.3~11.0%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최저교육비**('20년 기준) **대비 100% 수준**으로 초·중·고 모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24)

○ **(자활급여)** 참여자의 자활역량이 더욱 잘 반영되도록 **자활역량평가 개편**('24), **청년층 자산형성 확대*** 및 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 인상

* 청년내일저축 가입자 : (누적) ('23) 9만명 → ('25) 16만명

** 희망키움통장Ⅱ 정부지원금 : ('24) 월 10만 → ('25) 1년차 월 10만, 2년차 월 20만, 3년차 월 30만 원

※ **(수급자 증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3년 255만명에서 **'26.6월 295만명으로 40만명 증가**(생계 33만, 주거 40만 등)

2 급여별 적정성 평가

○ **(생계급여) '26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4인 가구**(광역·세종·창원 기준) **2,537,536원**이며, **타법지원액 제외시 1,519,329원**

- **'26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078,316원**으로,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최저생계비보다 558,987원(36.8%) 높은 수준**

○ **(의료급여)** 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두텁게 지원하여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기여**

* 보장률(급여+비급여, %): 의료급여 91.3 vs 건강보험 64.5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의료급여 6.4 vs 건강보험 소득 1분위 13.5 vs 건강보험 일반 5.0

- 수급자의 **복합적 취약성** 및 **건강·돌봄 욕구 증가**에도, **사후적 의료비 지원 위주**의 제도 운영으로 **건강성과**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

* '15~'25년간 노인 32.2→46.4%,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 심화, 아동·청년 만성·정신질환 2배 증가
** 건보 가입자 대비 예방 가능 입원 4.9배(2,068명/10만명), 회피 가능 사망 6배(554.7명/10만 명)

○ **(주거급여) '26년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에 기초한 **목표 기준임대료 대비 약 80% 수준**

- 필요액의 약 77% 수준이던 수선한도액은 '25년 1,601만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필요액**(1,628만원)의 **98.3% 수준**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매년 인상**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고등학교**는 '23년도 **최저교육비 대비 91% 수준**

- 교육급여 수급자의 **지원 수준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도 **지속 하락**하여 **상향 노력 필요**

* ('15) 3.35점 → ('18) 3.19점 → ('21) 3.18점 → ('24) 3.02점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5점 척도)

○ **(자활급여)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 **자활급여 지속 인상****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급여 보장성 강화

* (시장진입형 근로 단가) '26년 최저임금 대비 80% ('24년 78.5%)
** (연도별 자활급여 인상률) ('23) 2.1%, ('24) 2.5%, ('25) 2.9%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25년 참여자 6.4만명**까지 꾸준히 **확대**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① **(성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 범위 및 수준이 지속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 급여별 선정기준 차등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욕구별 보장 강화

② **(한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잔존**하며, 급여별 보장 강화가 **실질적 빈곤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

○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 정체, 낮은 자활성공률 등 빈곤의 장기화와 자립유인 부족, 복잡한 선정기준 등이 제도 접근의 문턱으로 작용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그 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극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 **(기본생활 보장 국가책임 강화)** 양극화가 기본생활 및 삶의 기회에 대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매트 역할 강화 필요**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수생활 보장

☞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가장 어려운 국민부터 두텁게 보호

○ **(기초생활보장 역할 확대)** 기본생활 보장의 출발점으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확대 필요**

☞ 양극화가 빈곤 고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보장 범위·수준 확대 및 자립과 회복의 기회 강화

◇ 이에 향후 3년간은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간 보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선**

* ① 제도 밖에 있는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고, ② 소득·재산 및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선정·보장수준 확대, ③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 강화

- **중장기로**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관련 사회보장제도와 연계·정합성 강화**

3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방향

비전	‘모두의 복지’를 위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목표	· (총괄)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곤 완화 효과 23% → 27% 확대 – (더 넓게) 빈곤층 중 공적소득지원 비수급층 5.7%→4% 감소 – (더 두텁게) 생계급여 기준 32%→35%, 주거급여 기준 48%→50% – (더 나아지게)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성공률 18%→21% 제고

[추진방향 1] 변화하는 빈곤에 대응하는 기초생활보장 고도화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보장기준 확대	1. [생계급여] 보장기준 실질적 개선 2. [의료급여] 예방·관리부터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장 전환 3. [주거급여] 주거여건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4.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범위 확대
2 제도 밖 빈곤을 줄이는 보호체계 강화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재산 소득환산체계 재설계 기반 마련 3. 신청주의 한계 보완을 통한 수급권 실현 강화 4. 빈곤 진입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의 위기안전매트 기능 강화 5. 연속적 의료안전망 구축
3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강화	1.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및 자립지원 강화 2.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3.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인 확대 4. 자활기업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4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합리화·효율화	1. AI·데이터 기반 급여업무 관리 고도화 2.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3. 급여별 인프라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추진방향 2] 기초생활보장의 미래지향적 발전체계 구축(중장기)

1	사회보장체계 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재정립
2	저소득층의 기본적 욕구 보장 강화 및 급여별 운영체계 개편
3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재설계

【핵심 추진과제】

❶ [빈곤 예방] 위기가구에 대한 예방·회복 지원제도 확대

☞ **[목표] 갑작스러운 위기**가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가구의 신속한 생활 회복 지원**

· **양극화 심화**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검토

* 現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가구 기준192만원, 4인487만원), **(일반재산)** 2.4억, **(금융재산)** 기준중위소득 100%

· **(긴급복지) 즉각적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우선드림**(30만원) **신설**, 위기상황 지속되는 **반복 수급 가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강화, 읍·면·동 적정인력 배치 등 **지방정부 전달체계 개선**

❷ [기본생활 보장] 보장 수준은 높게, 제도 밖 빈곤층은 더 넓게 포괄 보장

①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 인상

☞ **[목표] 필수생활**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확보**

· **(생계급여)** '28년부터 매년 1%p씩,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인상

· **(의료급여)** 예방-치료-회복-재가까지 지원 강화, 건강보험과 분절·격차 축소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인상

②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단계적 폐지

☞ **[목표]** 가족의 **소득·재산**에 따른 **수급 제한**을 줄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사각지대 해소**

· **(생계·의료) 중증 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폐지**('27.下)

· **(생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75세이상 노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 **(의료)** 의료·돌봄 필요 높은 대상에 대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 제외 검토(現 생계급여 기준)

③ [사각지대] 재산 소득환산체계 개선

☞ **[목표] 보유 재산**과 **실제 생활 여력 간 괴리**를 줄여 가구 여건에 맞는 **적정 보호 실현**

· 실제 현금화가 어려운 자동차·주택 등 **재산 유형별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 (예시)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예외적 월 4.17% → 소득환산율 월 4.17%, 예외적 월 100% 적용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 소득환산율 완화 → 한도액까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재산의 유형별 환산율을 계속 세분화·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재산기준 체계로 전환 검토**

❸ [빈곤 탈출] 근로·자산형성·탈수급을 잇는 자립 경로 구축

☞ **[목표] 근로**가 **소득·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탈수급 이후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강화**

· **(근로유인 강화)** 지속적으로 일할 유인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①**(청년)**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활동을 통해 증가한 소득을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연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②**(중장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검토**(예. 30%→20만원+30%) 및 참여자 욕구와 직무경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자활근로 모델* 개발**

* (예시) 시설관리·환경정비 등 공동작업형 업종,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단 모델 등

· **(자산형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가입자 규모 확대, 탈수급 지원금 및 추가 적립금 지원** 검토

· **(탈수급 부담 완화)** 근로소득 증가로 수급기준 초과해도 자립 기반 마련 시까지(예: 3년) 수급자격 유지하는 **의료급여 '자립이행 특례' 도입** 검토

4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향 1] 변화하는 빈곤에 대응하는 기초생활보장 고도화

◇ 3년 내 제도의 사각지대와 보장기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하는 빈곤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

◇ 제도 개선과 함께 급여관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및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운영체계 구축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보장기준 확대

○ (생계급여 보장기준 실질적 개선[국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8년부터 매년 1%p씩,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산정·활용체계 재정립) 가계소득의 변화, 제도의 보장성·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새로운 산정방식* 적용('27)[신규]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동성과 시차 문제 보완을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을 반영

- (법령 규정 정비) 산정방식에 활용하는 주요 사회·경제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28)

- (산정방식 평가·검증) '27년부터 3년간 적용 후 기준 중위소득의 적정성 및 산정방식 평가 추진('29)

○ (예방·관리부터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장 전환) 사후적 의료비 지원에서 건강성과 중심의 통합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

- (예방·관리체계 강화) 65세 이상 수급자 국가 건강검진 항목 개선 (혈액·요 검사, 흉부엑스레이 검사 등 도입) 통한 수급자 수검률 제고[신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참여 활성화 및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확대 연계[보완]

· 수급자 **만성질환 지속 관리**보완 및 **정신건강 관리** 지원 검토*신규

* (만성)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정신) 정신건강 검사 지원 통한 위기 수준별 서비스 연계 등

- **(간병 및 재활·회복 지원 강화) 의료·간병필요도가 높은 입원 수급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27.下)신규

· **지역책임의료기관** 및 **재활의료기관** 중심 퇴원 후 수급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보상 연계 방안 마련**

- **(퇴원 후 재가 정착 지원) 재가의료급여 고도화**확대 및 **통합돌봄 연계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일상 복귀 지원체계 구축**보완

· **주거급여**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및 **노인 요양시설 등 입소 신속 연계**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27~)

○ **(주거여건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선정기준 상향, 보장 수준·범위 현실화,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한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 **(선정기준 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6년 기준중위소득 48%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확대

- **(기준임대료 단계적 인상)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실제임차료 변동과 연계한 **산정방식 개편** 추진확대

- **(수선유지급여 한도·주기 현실화)** 건설공사비 상승률과 연계한 **수선한도 인상**,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의 합리적 개선**신규

- **(보장 범위·수준 인상)**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관리비 포함**, 비수급 아동가구 발굴 등 제도 내실화신규

○ **(교육급여 최저보장 확대)** 보장수준 확대 및 적정성 평가 기준 개선

- **(최저보장수준 단계적 확대)** '26년 계측 **최저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확대

- **(최저교육비 개선방안 논의)** 특정 학년 자녀 기준이 아닌 **모든 학교급별**로 **전체 학년**에 소요되는 **품목** 및 **단가**(내구연수) **계측**신규

2 제도 밖 빈곤을 줄이는 보호체계 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폐지[국정]) 중증 장애인 포함 가구 대상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우선 폐지**('27.下)[확대]

- **노인 가구는 초고령·독거 등 부양 필요도를 고려**하여 '30년 75세 이상 노인 가구까지 단계적 폐지 검토[확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국정]) 중증 장애인 포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27.下)[확대]

- **의료·돌봄 필요 높은 가구***에 대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 제외**(現 생계급여 기준) 검토[확대]

* 검토 예시: 중증·희귀질환, 장기요양 1·2등급 노인 포함 가구 등

< (예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검토 방향 >

	현행	개선안 (現 생계급여)
소득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40%)+(B×100%)** *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차감·제외 (교육비+의료비+사적이전소득 등)	■ 年 **소득*** **1.3억 원 초과** *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기본재산액 (예: 서울 364백만원) - 부채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A: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체계 재설계 기반 마련)** 실제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소득환산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

- **재산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검토('28~'29)[확대]

* (예시) **(자동차)** 단일 소득환산율 적용 등 단순화, **(주거용재산)** 단계적 소득환산율 완화 및 한도액까지 소득산정 제외, **(금융재산)** 물가상승, 가구규모 등을 고려한 생활준비금 공제 현실화

** 주거용재산 한도액 소득환산 제외와 연계하여 주택연금 우선 활용 및 수령액의 소득산정 방안 병행 검토(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 가입 곤란 가구에 대한 예외 기준 등)

- 재산을 가상의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컷오프)**로 전환 검토**('29~'30)[신규]

○ (신청주의 한계 보완)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를 국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7)신규

- 대상자 범위,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 **법적 기반**, 담당 공무원 교육 및 **면책·유인체계** 등 마련, 수급자 **선제 발굴·지원** 추진

- 직권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 보호 강화('27)

  * 직권 신청 중 주요 탈락 사유 분석을 통해 지생보 심의 근거 마련

○ (긴급복지 확대) **빈곤층 진입 예방**을 위한 위기안전매트 강화

- **(위기 예방·회복 확대) 양극화 심화**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취약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등 제도 확대 검토**확대

  * 現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일반재산)** 2.4억, **(금융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 **(우선드림) 즉각적인 위기상황*** **해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읍·면·동에서 소액**(30만원)을 **즉시 지급**신규

  * 일용직·단기 근로에 채용되었으나 출퇴근 교통비나 현장 작업용 필수 장비를 구매할 여력이 없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경우 등

- **(전달체계 개선)**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반복 수급 가구 대상 **통합사례관리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읍·면·동 적정인력 배치** 등보완

○ (연속적 의료안전망 구축) 수급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 및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의 연속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 **(자립이행 특례) 근로·사업소득 증가**해도 **일정 기간**(예: 3년) **자격 유지 지원** 검토, 자활 가능성이 높은 대상(예: 청년)에 시범적용 검토신규

- **(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밖 취약계층 포괄**하는 **의료안전망*** **구축**확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검토, 재난적 의료비 연계 등

- **(건강보험과 격차 해소)** 건강보험에는 있으나 의료급여에는 없는 제도* 도입·연계로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 간 분절·격차 해소**('27.下~)신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다제약물 관리사업, 모바일 건강관리(건강보험 25시 앱) 등

3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강화

< 대상별 >

○ **(청년 자립 기반 강화)** 분리 거주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 청년 **근로소득과 자산형성 연계 강화** 검토 및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 **(분리거주 저소득 청년 보장)**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검토('27)신규

  * 지원 요건 구체화 등 시행방안 마련,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모니터링 등 추진

- **(근로유인)** 자립 지원 위해 **근로소득 공제 등 근로활동**을 통해 증가한 소득과 **자산형성지원의 연계 강화** 방안 검토확대

- **(자활 지원) 도시형 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청년 참여자 확대***, 청년 일경험 위한 **인턴처 발굴 확대** 등 맞춤형 자활지원 강화('27)확대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000명 확대('27년, 1,200명→2,200명)

○ **(중장년 근로 참여 지원)** 주 소득활동을 책임지는 중장년층이 실직해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도록 **소득 및 자립 기반 회복 지원**

- **(근로유인)**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보장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검토**('28)확대

  * (예시) 現 30% → 20만원+30%

- **(특화 자활)** 참여자 욕구와 직무경험, 특성을 파악하여 **중장년 특화 자활근로사업 모델* 개발**('28) 통해 민간시장 취·창업 확대신규

  * (예시) 시설관리·환경정비 등 공동작업형 업종,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형 사업단 모델 등

○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생계수급 노인 대상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 허용 검토('28)신규

  * 旣 참여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 선발기준 마련 등 병행

< 공통 >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국정]) **자활역량·의지·환경**에 따른 **참여자별 자활목표 구분**과 **목표별 집중지원**을 통해 자활지원체계 효과성 제고('28)[신규]

현 재			→	개 편(안)			
사업단 유형	배치 기준	자활 목표		사업단 유형		배치 기준	자활 목표
시장진입형	역량과 관계없는 배치	경제적 자활 * 자활성공률 (취·창업)		자립 도전형	창업도전형	근로 능력, 자활 의지 양호	경제적 자활 (자활성공률)
인턴형					취업도전형		
사회 서비스형				자활 준비형	사회서비스형	근로 능력, 자활 의지 낮음	사회적 자활 (자립의지 변화, 사회통합도 등)
					근로준비형		

- (사회적 자활 개념 도입) 근로 능력, 자활 의지 등이 낮은 참여자는 **자활의지 제고, 개인 역량 강화, 사회 참여 증진** 등을 목표로 설정

- (단계적 추진)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 확보, 적용 지역자활센터 확대, **시범사업 평가 및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단계적 개편 추진

<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단계적 확대 계획 >

1차 시범사업 ('26.7~12월)	→	2차 시범사업 ('27.1~12월)	→	전면 적용 ('28년~)
50개소		100개소		251개소 (전 지역자활센터)

○ (자산형성지원 강화) 탈수급 유인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입자 규모 확대*** 및 **탈수급 지원금** 지급 검토, 청년 **중도해지 최소화**('27)[확대]

* 사업성과평가 과정을 거쳐 희망저축계좌 I ('27년 2.9만명), 청년내일저축계좌(15~39세 수급·차상위 가구 청년 '27년 2만명) 가입자 규모 확대 검토

○ (자활기업 지원) 향후 5년간 **자활기업 창업 총 500개소**를 **목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컨설팅** 확대, **업종 다변화** 추진('27)[보완]

- 전국·광역 단위 사업모델 개발, 법인화 지원 등 **자활기업 규모화** 지속 추진,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 기능도 강화**

4 제도 운영 합리화 · 효율화

○ **(AI·데이터 기반 급여업무 관리 고도화)** 소득·재산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 동시에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생성형 AI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 지원('27) 및 고립·위기아동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28~)확대

- **신청→조사→결정→지급→사후관리 등 全 단계에 AI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관련 증빙자료의 연계·분류 및 정합성 검증 지원('29)신규

- 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급여관리에서 벗어나, 급여 과오지급 및 자격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확인하는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및 공급·이용 측면에서의 관리 개선 병행

- **(실질적 의료접근성 제고)** 공공병원·공공기능 민간병원의 **취약계층 2·3차 진료 활성화**, **식대** 등 **건강보험과의 보상격차 해소**보완

- **(공급 측면 과잉 의료 관리) 경증 과잉 항목 관리 강화**신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한 **입원 심사 개선,** 의료기관 **조사·심사 강화**('27.下)보완

- **(과소·과다 이용 방지)** 입원 필요자·치료단절자 발굴을 통해 **단기 입원, 회복** 및 **퇴원 후 관리**('27)하여 **증상 악화·장기 입원 방지**보완

  · **이용일수 관리 개편** 통한 외래·입원·투약별 **과다 이용 핀셋 관리**('27.下)

  * 일률적 외래+입원+투약일수 합산 관리 → 외래·입원·투약 분야별 체계적 관리, 실효성 낮은 연장승인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편

○ **(인프라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효율적 급여 지급을 위한 기반 구축

- **(자활인프라 고도화) 중앙-광역-지역 전달체계** 정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센터 기능 개편**, 자활사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29)신규

- **(의료급여 전달체계 확충)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역할 확대**, 적극적 건강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료급여관리사 역할 강화**보완

- **(주거급여 품질관리 체계 구축)** 임차급여 수급자 거주주택 및 수선유지 공사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및 시스템을 통한 관리신규

- **(교육급여 절차 개선)** 교육급여와 바우처를 동시 신청 실시('28)보완

[추진방향 2] 기초생활보장의 미래지향적 발전체계 구축(중장기)

◇ 앞으로의 3년은 제도 자체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인구구조·사회환경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후의 안전매트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 **대상별·욕구별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는 동시에, **탈수급 지원제도**로서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재검토**

1 사회보장체계 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역할 재정립

【검토배경】

○ '15년 이후 근로빈곤층 대상 근로장려금(EITC)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소득보장제도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공적소득보장 미수급 비율은 5.7% 수준

○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가운데, 다양한 공적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및 보장범위 재정립 필요

○ **(기본방향) 생계급여는 최후의 안전매트**로서 기본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유지하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소득보장 내실화 방안 마련**

- 노인·장애인, 아동·청년, 근로빈곤층 등 대상별 특성, 현행 제도·보장수준, 제도간 정합성 분석 → 개편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 검토

※ [예시] ① (근로빈곤층) 근로능력 유무를 토대로 생계급여는 근로 취약계층만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별도의 보장제도 마련 필요 여부 중장기 검토
② (근로 무능력 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연령특성에 맞는 대상별 공공부조 제도를 확대, 생계급여는 최종적 최저생활보장 기능 수행하는 방안 병행 검토

○ **(추진방식)**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조정 필요 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2 저소득층의 기본적 욕구 보장 강화 및 급여별 운영체계 개편

【검토배경】

○ '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욕구별 보장**을 강화해 왔으나, 급여별 **보장수준의 적정성** 및 관련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보장체계의 분절 및 격차, 주거급여와 주거정책, 교육급여와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 등 급여별 정책 체계와의 연계·조정 필요성 등

○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 **급여별 역할 및 운영체계 재검토** 추진

○ **(검토방향)** 빈곤층의 욕구별 보장 강화를 위해 급여별 보장방식 및 운영체계 개편 검토

① **(생계·주거급여) 현금성 급여로서**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최후의 소득보장 기능** 유지하되, 관련 제도 간 정합성 제고

② **(의료급여)** 빈곤층의 **건강한 삶 보장** 목표로 **의료빈곤 방지** 및 **건강 악화 경로 차단**을 위한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

-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 단위 수급권을 토대로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로 발전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분절·격차 해소**를 바탕으로 양 제도 간 연계 강화 및 중장기 관계 정립 모색

③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사업**과 **연계·내실화**

④ **(자활급여)** 최근 참여자 증가규모·속도 및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성 유지가 가능한 적정 규모 도출**

* 참여자의 특성, 자활성공 가능성, 인프라 현황, 자활사업단 여건 등 종합적 검토

- 사업의 **효과성 유지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건부과 및 근로능력평가 체계 개편, 인프라 확대 등 중장기 방안** 제시

3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재설계

【검토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 보충성 원칙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최저생활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운영**

○ 그러나, 1~2인 가구 증가, 저소득층 자산격차 심화, 자동차 등 재산의 생활필수재 성격 확대 등 **사회 구조·환경 변화**

*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급여기준을 전환한 이후, 중위소득 변동 등을 고려한 최저생활 보장기준의 적정성 점검 필요

○ **인구·사회환경 변화와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보장단위, 소득·재산 산정방식 및 최저생활 보장기준 등 **제도 운영원칙 재검토** 추진

○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보장단위 개선)** 가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부부 등 다양한 생활단위를 고려한 보장단위 개선 검토**

* (영국) 개인 또는 커플을 기본단위로 지급, (독일) 가장을 급여지급률 100%로 하고, 가구원별 급여수준(60~90%) 적용, (호주) 근로연령층을 독신/커플로 구분

○ **(소득·재산 산정체계 합리화)** 타 부처·지자체 등 지원 확대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도 주요 원칙 재정립

- **(재산의 소득환산체계 개편)** 실제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판단하도록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선정체계 마련 검토

* (검토방향)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재산기준 체계(컷오프방식)로 전환 검토

- **(공적이전소득 공제방식 개선) 대상자별로 추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예. 대상별 추가지출 범위 한도 설정 방안 등)

○ **(최저생활보장 기준 재설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외에 **생계급여 보장수준 적정성 평가 기전* 마련**

* 최소생활 및 통상적인 생활수준의 생계비, 실제 저소득층 지출현황 등 고려

- **(기준 중위소득 산정 개편)** 정책적 빈곤 기준선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및 산정방식 재검토

5 추진 체계

1 기본계획 이행 및 평가

○ **(연차별 점검)** 기본계획 과제별 **진행상황 및 추진실적 정기 점검**

- 법령 개정, 제도 시행 등 주요 이행단계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추진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향후 계획을 함께 점검

○ **(주요 성과 확인)** 수급자 규모 및 변동 현황, 급여수준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효과와 영향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이행상황, 주요 성과, 중장기 과제 논의 상황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

- 특히, 중장기과제는 소위원회 등에서 기초분석과 쟁점 검토를 선행, 중생보에서 향후 추진방향, 보완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

2 정책대상자 및 의견 수렴 체계화

○ **(정책대상자 의견수렴)** 주요 제도개선 과제 검토 시 수급자·비수급 빈곤층 등 정책대상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현장 의견수렴)** 現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핵심요원 기반으로, 제도 개편 시 영향도, 집행가능성 사전검토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3 중장기 과제 검토를 위한 논의 구조 마련

○ **(기획단 구성 운영)** 중장기 과제의 실효성있는 논의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미래 기획단 구성·운영**[가칭]

- 중장기 과제로 제시된 각 세부 과제별로 분과를 구성, 과제 검토·분석 및 논의 실시

- 정책대상자 및 현장의 의견 수렴 채널도 병행 운영

참고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안)

분야	추진 과제	2026년 현재		2029년
급여 선정·보장 기준 확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32%**	➡	**기준 중위소득 34%**
	예방·관리부터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장 전환	(예방·관리)**예방가능입원 2,068명** (10만 명당) (재가정착)**재가복귀 3,000명**		(예방·관리)**예방가능입원 1,860명** (10만 명당) (재가정착)**재가복귀 4,500명**
	주거여건반영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수급자 수 **171만 가구** 임차료·수선유지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수 **204만 가구(+33만 가구)** 임차료·수선유지비 +**관리비** 지원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최저교육비의 **91% 지원**(고등)		최저교육비의 **100% 지원**
보호체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146만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수 **168만 명**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156만 가구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수 **180만 명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체계 재설계	자동차재산 ▲ **소득환산율 월 100%** ▲ **예외적으로 4.17% 적용**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 단계적 완화**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단계적 완화**
	신청주의 한계 보완	수급자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수급 신청	➡	**위기상황 등**에는 수급자 동의가 없어도 **직권 신청**
	긴급복지 기능 강화	위기상황 현장 확인 후 지원 재산기준 ▲ **일반재산 2.4억 원** ▲ **생활준비금 기준중위 100%** 긴급복지 지원으로 관리 종료		즉각적위기 해소위한 **우선드림** 재산기준 ▲ 일반재산 상향 ▲ 생활준비금 인상 위기상황 반복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연속적 의료안전망 구축	**탈수급자 3.8만 명**		**탈수급자 4만 명(+5%)**

실질 소득 증대 및 자립 기반 강화	**분리거주 저소득 청년 보장**	부모와 거주지 달리해도 **생계급여 같이 지급**	➡	거주지 달리하는 경우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
	대상별 근로유인 강화	(청년)60만원 + 30% 공제 (중장년)공제율 **30%** 일괄 적용 (노인)일자리 참여 제한		(청년)**근로소득-자산형성 연계** (중장년)공제 확대 (노인)**공익활동형 참여 허용**
	대상별 특화 자활지원	**청년특화** 자활참여 **1,200명**		청년특화 자활참여 **2,200명**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자활성공률 18%**		**자활성공률 21%**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누적 가입자 **18.7만 명**		청년내일저축계좌 **누적 가입자 24만명 이상**
	자활기업지원	자활기업 **977개**		자활기업 **1,300개**
제도 운영 합리화 · 효율화	**급여업무 관리 고도화**	복지업무 규모 및 제도 복잡성 증가로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급여 신청서류 검증 등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 AI 자동 처리**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미충족의료 경험률 11.5%** 외래 300일 초과자 **1,917명**		**미충족의료 경험률 10%** 외래 300일 초과자 **1,530명(-20%)**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자활 미고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 **19.5만 명** 주거와 타 복지서비스 미연계 교육급여-바우처 이중 신청		사회적 자활 **참여자 자활의지 제고, 사회 통합 효과 측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 **21.5만 명(+10%)** 돌봄 등 **타 복지서비스 발굴·연계 확대** 교육급여-바우처 **동시 신청**

참고 2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 일정

세부 추진과제	추진 일정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보장기준 확대	
1-1. [생계급여] 보장기준 실질적 개선	
1-1-1. 생계급여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1%p씩 인상('28~)
1-1-2. 기준 중위소득 산정·활용체계 재정립	산정방식 적용('27~), 평가·검증('29)
1-2. [의료급여] 예방·관리부터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보장 전환	
1-2-1. 예방·관리체계 강화	단계적 추진('27~)
1-2-2 간병 및 재활·회복 지원 강화	단계적 추진('27~)
1-2-3 퇴원 후 재가 정착 지원	단계적 추진('27~)
1-3. [주거급여] 주거여건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1-3-1.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향후 50%까지 단계적 상향
1-3-2. 임차급여 수준 현실화	기준임대료 인상
1-3-3. 수선한도 현실화 및 제도운영 개선	공사방식 개선('28) 수선한도 현실화('29)
1-3-4. 보장범위 및 취약계층 보장 수준 제고	관리비 지원('28)
1-4.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범위 확대	
1-4-1. 최저보장수준 단계적 확대	시행('27~)
1-4-2. 최저교육비 개선 방안 논의	시행('29)
2. 제도 밖 빈곤을 줄이는 보호체계 강화	
2-1.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	
2-1-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실질적 폐지	중증장애인 폐지('27.下) 단계적 개선 검토('28~)
2-1-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2-2. 재산 소득환산체계 재설계 기반 마련	
2-2-1. 재산 유형별 산정기준 합리화 적용 검토	소득환산율 완화 검토('28~)
2-2-2. 재산의 소득환산제 대체모형 설계	체계 전환 검토('29)
2-3. 신청주의 한계 보완을 통한 수급권 실현 강화	
2-3-1. 생계급여 직권신청 방안 마련	시행('27)
2-3-2.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 체계 마련	시행('28)
2-3-3. 교육급여 대상자 조기 발견·연계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27)
2-4. 빈곤 진입 예방을 위한 긴급복지의 위기안전망 기능 강화	
2-4-1. 즉각적 위기 해소 위한 우선드림 신설	시행('27)
2-4-2.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단계적 추진('28~)
2-4-3. 긴급복지 사후관리 강화 등 전달체계 개선	시행('28)

세부 추진과제	추진 일정
2-5. 연속적 의료안전망 구축	
2-5-1. 의료급여 자립이행 특례 도입	도입 검토('27~)
2-5-2.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단계적 추진('28~)
2-5-3. 건강보험과 격차 해소	단계적 추진('27~)
3.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강화	
3-1.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및 자립지원 강화	
3-1-1. 분리거주 저소득 청년의 보장 강화	시행 추진('27)
3-1-2. 청년 및 중장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도입	도입 검토('28~)
3-1-3. 청년 및 중장년 특화 자활지원 강화	청년 지원 강화('27) 중장년 특화 모델 개발('28)
3-1-4.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일자리 참여 도입	시행 추진('28)
3-2.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시행('28)
3-3.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인 확대	
3-3-1. 자산형성지원 가입규모 확대	시행('28)
3-3-2. 탈수급 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28)
3-3-2. 청년 중도해지 방지	방안 마련('27)
3-4. 자활기업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3-4-1. 창업지원 강화	창업자금 지원 및 컨설팅('27~)
3-4-2.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기업지원 강화('27~)
3-4-3. 자활기업 홍보 강화	공동브랜드 마련·홍보('27~)
4.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합리화·효율화	
4-1. AI·데이터 기반 급여업무 관리 고도화	
4-1-1. AI 기반 지능형 위기관리 체계 도입	통합 플랫폼 구축('28)
4-1-2. 급여업무 지원 AI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운영('28~)
4-2. 필요한 의료보장 강화 및 과다이용 유발 구조 개선	
4-2-1. 실질적 의료접근성 제고	단계적 추진('27~)
4-2-2. 공급 측면 과잉 의료 관리	시행('27)
4-2-3. 과소·과다 의료 이용 방지	시행('27)
4-3. 급여별 인프라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4-3-1. 자활지원 전달체계 정립 및 성과 측정 개선	사회적 성과 지표화('29)
4-3-2. 의료급여 전달체계 확충	단계적 추진('27~)
4-3-3. 주거급여 품질 관리 및 성과 평가·모니터링	단계적 추진('27~)
4-3-4. 교육급여 절차 개선 및 성과 관리·환류	바우처 동시 신청('28)